

# 전매동의서(민영주택용)

유효기간	전매동의일로부터 2개월
------	--------------

○ 주택의 표시

	아파트          동          호	입주자모집공고일	년   월   일
주택소재지		입주자 선정일	년   월   일
전용면적	.      m <sup>2</sup> 잔금완납여부 <input type="checkbox"/> 미납 <input type="checkbox"/> 완납	전매제한기간	년

분양자 (사업시행자)	성 명		법인등록번호	-
	주 소	□□□□□□	담당부서	
			연락처	

○ 양도인·양수인

양도인 (수분양자)	성 명		주민등록번호	-
	주 소	□□□□□□	연락처	자택
			H.P	
양수인 (제4·7호의 경우에만 작성)	성 명		주민등록번호	-
	주 소	□□□□□□	연락처	자택
			H.P	

○ 전매동의사유 (주택법시행령 제73조제4항)

<input type="checkbox"/> 1호:근무,생업,질병,취학,결혼	<input type="checkbox"/> 2호:상속주택으로 이전	<input type="checkbox"/> 3호:해외이주 또는 체류
<input type="checkbox"/> 4호:이혼으로 배우자에게 이전	<input type="checkbox"/> 5호:공익사업 이주대책자	<input type="checkbox"/> 6호:경매,공매
<input type="checkbox"/> 7호: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그 배우자에게 증여	<input type="checkbox"/> 8호:실직, 파산, 신용불량	

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73조제4항에 의하여 위 표시주택의 분양권(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)에 대하여 전매동의 함.

전매동의일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년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월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일

전매동의자 :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장 (인)

※ 해당 주택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우선매입 의사가 없으며, 본 동의서의 유효기간(전매동의일로부터 2개월)내에 양도인·양수인께서는 부동산실거래가신고필증을 받아 사업주체(분양자)와 권리의무승계계약 체결하셔야 합니다.